## 5. 공통적인 안전조치사항

- (1) 작업전 관리감독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을 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안전모, 안전대, 해상보호장구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를 점검하고 작업 전에 보호구의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 작업 중에 착용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관리감독자는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시작 전 또는 작업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(가) 재료 .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
  - (나) 올바른 작업 방법 및 순서를 근로자들에게 교육
  - (다) 작업방법을 지휘하고 이를 감시
  - (라)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태를 감시
- (5)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.
  - (가)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 유지
  - (나) 화재, 도난, 소음 등의 방지,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
  - (다)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,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
  - (라) 주변도로의 정비, 교통정리,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
  - (마) 공사 중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 전장구,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한다.
- (6) 공사구역 및 부근해역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(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)과 협의하고 공사관련자에게 규제사항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.
- (7) 작업구역은 간판, 울타리, 부표(등부표 등)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